

#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

( 2017. 3. . )

국군기무사령부

## 목 차

- 현상 진단
- 비상조치 유형
- 위수령 발령
- 계엄 선포
- 향후 조치

# 현상 진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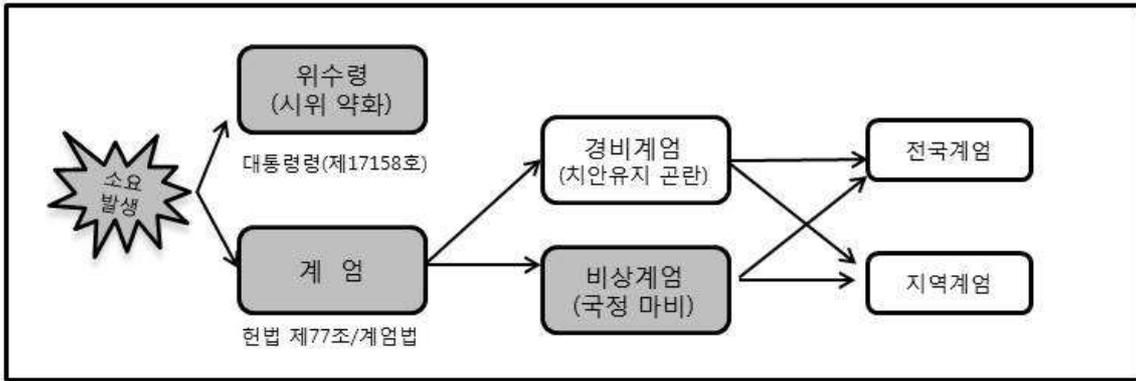
## <現 상황 평가>

- 정치권이 가세한 촛불·태극기 집회 등 진보(중북)-보수 세력간 대립 지속
  - 촛불 집회 : 18차 연인원 1,540만 여명, ‘기각되면 혁명’ 주장
  - 태극기 집회 : 15차 연인원 1,280만 여명, ‘인용되면 내란’ 주장
- 北의 북극성-2호 시험발사(2.12)에 이어 오는 3월 한·미 KR/FE 연습에 맞춰 北 핵실험·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 가능성 상존
- 일부 보수진영에서 계엄 필요성 주장하나, 국민 대다수가 과거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계엄시행 시 신중한 판단 필요

## <탄핵결정 선고 이후 전망>

-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하여 청와대·헌법재판소 진입·점거를 시도
  - 정부(경찰)에서 대규모 시위를 차단하자, 국민감정이 폭발하고 동조 세력이 급격히 규합되면서 화염병 투척 등 과격양상 심화
  - 사이버 공간상 유언비어가 난무하고, 진보(중북) 또는 보수 특정인사의 선동으로 인해 집회·시위가 전국으로 확산
  - 학생·농민·근로자 및 시민단체가 가세하고,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·무기탈취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치안불안 야기
- ※ 北의 도발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악화로 인한 국정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, 군 차원의 대비 긴요

# 비상조치 유형



## < 위수령 > [참고 1]

- 계엄상황이 아니어도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병력을 증원하여 軍 주둔지를 방호
  - ‘50.3. 육군부대가 주둔지역 경비·지역 군기유지 및 육군에 속하는 시설보호 목적으로 제정, 필요 시 시·도지사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군 병력을 지원하는 사항을 일부 포함
- 서울특별시 등 시·도지사로부터 병력지원 요청을 받았을 때, 육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경찰 담당 중요시설 방호 및 시위현장에 투입

## < 계엄 >

- 행정기관만으로 치안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선포하는 것으로 軍작전 보장을 위해 행정·사법 사무만 관장하고 현행법 체포 가능
    - 비상계엄은 행정·사법 기능 모두 마비 시 선포하는 것으로, 모든 정부 부처를 지휘·감독하고 직접 사법처리 및 계엄 군사법원 회부
- 서울특별시, 9개 도, 7개 광역시
- 선포범위에 따라 전국계엄과 지역계엄으로 구분하며, 17개 시·도 중에서 1개 시·도라도 제외될 경우에는 지역계엄으로 규정
    - \*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·감독 책임은 전국계엄 시 대통령, 지역계엄 시 국방장관

※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,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(경비→비상계엄) 시행 검토

# 위수령 발령

## < 시행 요건 >

- 평화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되면서 경찰력만으로 중요시설 방호 및 시위대에 대한 통제 곤란
  - \*시위 동조세력이 급격히 증가하여 경찰통제 불응, 중요시설 점거시도 등 질서혼란
- 서울특별시장 등 시·도지사가 치안유지를 위해 軍 병력 출동지원 요청

## < 절차 >

- 육군총장은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지역에 주둔하는 부대 지휘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
  - \*육군총장은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 위수사령관을 임명할 수 있다.(위수령 2조③항)
- 위수사령관은 시위양상이 위급할 경우 위수령을 발령한 後, 방송·통신·신문 등을 이용하여 담화문 발표
  - \*과거 3차례 위수령 발령의 경우 대통령이 국방장관 등에게 위수령 발령 지시, 위수사령관 명의 담화문 발표
- 위수사령관은 軍 담당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자체 병력으로 방호하고, 필요 시 관할 外 부대에 병력증원을 요청하여 경비 강화
  - \*요청을 받은 부대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.(위수령 8조)
- 위수사령관은 서울특별시장 등 시·도지사로부터 병력 지원을 요청 받은 경우, 육군총장 승인을 받을 후 병력출동
  - 軍 병력은 경찰 담당 중요시설을 방호하거나 시위대 해산 등 치안유지, 이에 대한 조치는 관할 시장·군수 및 경찰서장과 협의下 시행

## < 제한사항 / 해소방안 >

군령권은 국군조직법 개정('90.8.) 시 육군총장→합참의장으로 이관

### ① 군령권이 없는 육군총장은 병력출동 승인 불가

\* 국군조직법 9조(합참의장 권한) : 독립전투여단급 이상 부대이동 등 군사사항은 국방장관 승인 득

- 병력출동 승인은 육군총장 外 합참의장·장관 승인下 시행

위수령 개정 시 8~9개월 소요/국회의 법령폐지 시도 우려

- 병력출동 승인권자 개정(육군총장→합참의장)이 제한되므로, 병력출동 시 육군총장 승인 後 합참의장·장관 별도 승인을 받아 논란소지 해소

### ② 국민 권리·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

- 국민 권리·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는 있으나, 軍의 책임은 별무
- 근거 위수령을 발령한 것으로 차후 헌법소원 등을 통해 동 법령의 무효 또는 국가배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, 軍의 직접적인 책임 무

### ③ 지자체장 성향에 따라 軍 병력출동 요청 여부 결정

- 시·도지사가 경찰 담당지역 치안유지를 위한 병력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軍 중요시설 위주 전담 방호
- 시위대가 軍 중요시설에 접근 시, 경찰 협조下 외곽 경계선을 확장시켜 조기 접근통제

### ④ 국회의 위수령 무효법안 제정 시도

- 국회의 위수령 무효법안 제정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
- 국회에서 위수령 무효법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 국회는 재의를 해야 하므로 일정기간(2개월 이상) 위수령 유지 가능

국회 재의 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과 2/3 이상의 찬성을 통해 법률로 확정

**<서울지역 위수령 발령 시 조치>**

- (시행지침) : 수방사는 서울 특정경비지역 담당
- 수방사령(대통령령) : 1경비단은 청와대 경비를 담당
-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령: 관련부서에 경호 관련 요청 시 협조

- 육군총장은 ‘수방사령관’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, 시위대 대응 준비
  - 우선, 수방사 예하사단 가용병력 출동 및 증원 준비

- 위수사령관, 광화문 일대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시도 시 ‘위수령’ 발령 검토

**\*청와대 일대에 수방사 1경비단이 주둔하고 있어 위수령을 발령하여 방호 가능**

담화문 발표

- 위수사령관은 시위대 위협 고조 시 위수령을 발령하여 병력 출동, 중요시설 방호 및 시위대 통제

- 軍 담당 중요시설인 청와대에 대해 방호병력 증원

**\*경찰이 1선에서 시위대 진입을 막고, 군은 2~3선에 배치하여 방어선 보강**

- 경찰 담당 중요시설은 서울특별시장 요청 시 육군총장을 거쳐 의장·장관 승인下 軍 병력을 출동시켜 방호

경찰 담당 중요시설(7) : 대법원, 헌법재판소, 정부종합청사, 국회, KBS, 한국은행, 국정원

- 광화문·국회 등 시위현장에 병력요청 시 육군총장을 거쳐 의장·장관 승인하 병력 출동, 경찰과 협력하여 시위대 통제

- 軍 병력은 시위대 통제간 현행범을 체포항려 경찰에 현장 인계

- 위수사령관은 軍 병력에 대한 발포권한을 엄격히 통제

발포 가능시기 : ①폭행을 받아 부득이한 때, ②다수 인원이 폭행해 진압할 수단 부재 시 등

- 서울 인접 증원 가능 부대는 기계화 5개 사단(8·20·26·30사단, 수기사), 특전 3개(+ ) 여단(1·3·9여단, 707대대)

**※ 국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한 가운데 치안질서를 회복시키는 데 총력**

# 계엄 선포

## < 경비계엄 >

### 시행 요건

-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, 일부 폭력사태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혼란 조성
- 이에, 경찰력만으로 치안확보가 곤란하여 軍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나, 사법업무를 포함한 국정기능은 정상 가동

### 선포 절차

- 국방부는 ‘비상대책회의’를 통해 계엄 선포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NSC(안보실장·행자부장관 등)를 통해 협의
- 계엄선포 필요시 국무총리 보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·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

### 계엄사 편성

【참고 2】

- 계엄사령관은 ‘육군총장’을 임명, 합참의장이 北 도발 대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  
연.부사령관은 전시 지상구성군사령관 수행, 합.차장(해군)은 지상병력 지휘 제한 등 부적합
- 계엄사는 C4I체계가 구축된 ‘B-1 문서고’에 설치하고, 2실 8처로 구성  
\* 계엄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시 편성

【참고 3】

- 계엄업무수행軍은 기동성·현행작전 등을 고려, 기계화 6개 사단·기갑 2개 여단·특전 6개 여단(+)로 구성  
※ 지구(지역) 계엄사령관은 추가 소요되는 계엄임무수행군은 별도 편성·운영

## 계엄 시행

- 계엄임무수행軍은 중요시설 방호 및 소요진압에 주안을 두고 운용
  - 서울의 경우, 중요 방호시설은 탄핵결정 관련 핵심시설인 청와대·헌재·정부종합청사·국방부(합참) 등 4개소이며, 3개 여단(+) 규모가 전담
  - 과격시위 예상지역은 광화문·여의도(국회) 일대이며, 광화문은 3개 여단,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

국정원(국가사이버안전센터)·경찰(사이버안전국)·군(사이버사령부) 등

- 국가 ‘사이버 대응조직’ 활용, 北 사이버심리전 활동 차단

## < 비상계엄 >

### 시행 요건

- 경찰의 소요사태 진압과정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자, 과격시위대에 의한 경찰·행정관서 난입 및 무기탈취 등 극도로 사회질서 혼란
- 이에, 정부의 행정, 사법 기능을 포함한 국정 전반이 마비상태에 이르러 軍에 의한 사회질서 조기 안정화 필요성 대두

### 선포 절차 / 계엄사 편성

정부부처·법원행정처 지휘·감독 추가

## 계엄 시행

- 계엄협조관(48명)은 중·대령급 요원으로 편성하여 24개 정부부처에 파견하고 정부연락관(58명)을 소집, 정부부처 지휘·감독

#### 【참고 4】

국정원·검찰·헌병 등

- 합동수사본부는 정보수사기관을 조정·감독하여 집회·시위 주동자 등 특별조치권을 위반한 계엄사범을 색출, 사법처리
- 계엄사 보도검열단(48명)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(9명)을 운영, 軍 작전 저해 및 공공질서 침해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통제
- 방통위 ‘유언비어 대응반’은 시위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의 SNS계정을 폐쇄하는 등 사이버 유언비어 차단

## **향후 조치**

**< 시행 준비 미비점 보완 > : 탄핵결정 선고일 限**

- 서울지역 ‘위수령’ 발령 관련 증원부대·방호계획
- 계엄(합수) 기구 설치·운영(案) 등

**< 위수령 발령 또는 계엄선포 여건 평가 > : 지속**

- 현재 탄핵결정 선고 前後 진보(종북)·보수 세력 동향 추이
- 탄핵심판 결과 관련 집회·시위 양상 변화 등

**< 위수령 또는 계엄 시행준비 착수 > : 의명**

- 본 대비계획을 국방부·육본 등 관련부대(기관)에 제공
- 계엄(합수) 기구 설치·운영 준비
- 계엄임무수행軍 임무수행 절차 구체화

**※ 철저한 보안대책 강구下 임무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.**

**【참고 1】 위수령·계엄(경비·비상) 선포 사례**

**위 수 령(3회)**

구분	출동병력	군사활동
한일협정 학생대모 ( '65. 8.)	·수도경비사령부 3개 대대 ·서울 근교부대(미상) <서울특별시장 요청>	·휴업령 ·데모 학생 검거 ·예비역 장성 검거 ※경찰에서 사법 처리
교련반대 학생 反정부시위 ( '71.10.)	·수도경비사령부 <서울특별시장 요청>	·휴업령 ·소총·근봉 소지하 대학교 진입, 데모주동 학생 연행 ※경찰·중앙정보부에서 사법 처리
부마사태 ( '79.10.)	·5공수여단(부산)      ·39사단 ·육군대학, 해군통제부 <경남도지사 요청>	·소요진압작전 ·위력시위 ※경찰에서 사법 처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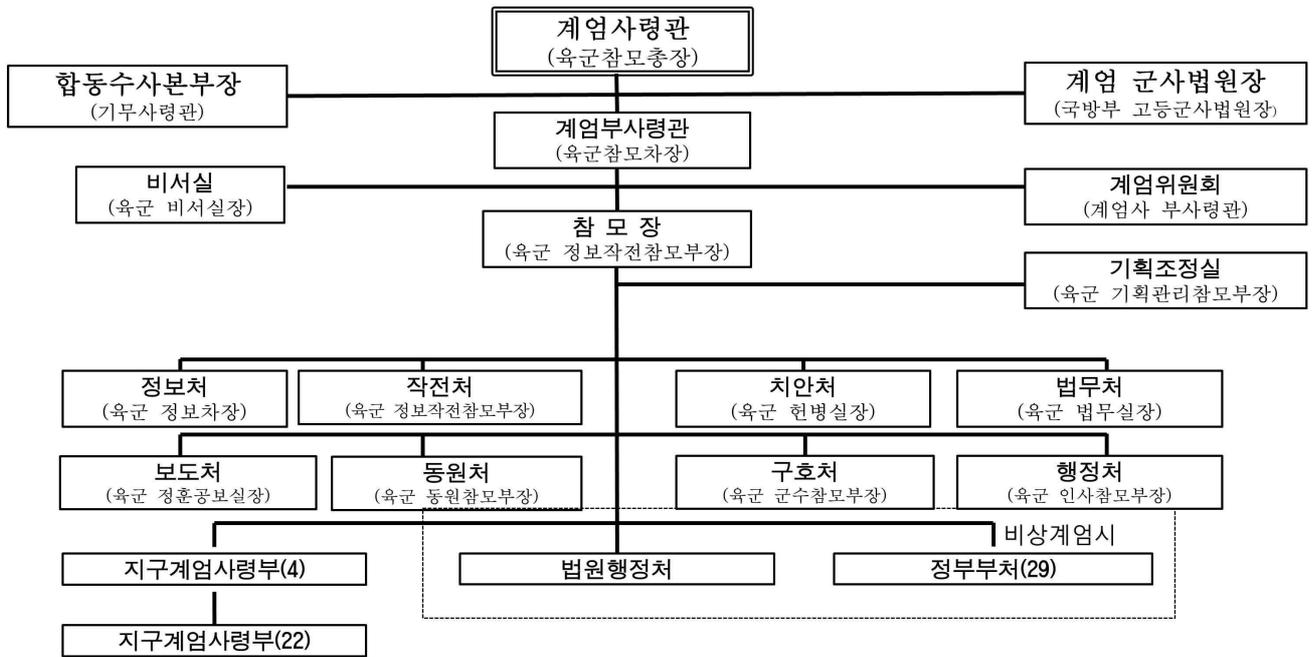
**경비계엄(2회)**

구분	선포기간	군사활동	선포지역
4·19 학생의거 ( '60. 4.)	'60. 4. 19. 13:00~17:00 * 비상계엄 선포 직전	·데모 진압	·서울
5·16 군부 쿠데타 ( '61. 5.)	'62. 2. 7.~12. 5.(191일) *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별도 선포	·데모 진압 ·불법행위 정치인 검거	·전국

**비상계엄(9회)**

구분	선포기간	선포지역
제주폭동	·'48.10.17.~12.31.(76일)	·제주도
여수·순천반란	·'48.10.17.~종료 미상	·여수 · 순천
6·25 전쟁	·'50.7.8.~'53.7.23(3년 16일)	·전국 또는 지역
4·19 학생 의거	·'60.4.19.~6.7.(50일)	·서울 등 5개 도시 ⇒ 전국
5·16 군부쿠데타	·'61.5.15.~5.27.(12일)	·전국
6·3 사태	·'64.6.3.~7.29.(57일)	·서울 일원
10월 유신	·'70.10.7.~12.13.(68일)	·전국
부산소요사태	·'79.10.18.~10.27.(9일)	·부산
10·26 사태	·'79.10.27.~'81.1.24.(439일)	·전국/제주도 제외한 지역

## 【참고 2】 게임사령부 편성표



## 【참고 3】 게임임무수행군 편성(안)

### □가용 병력

기계화사단(6개)	기갑여단(2개)	특전사(6개+)
8·11·20·26·30사단, 수기사	2·5기갑	1·3·7·9·11·13여단, 707대대

### □서울 지역

구분		현 방호력	추가투입
중요시설	청와대	군: 2,400명, 경찰: 500명	30사단 1개 여단, 1공수여단
	헌법재판소	경찰: 5명, 청경: 6명	20사단 1개 중대
	정부청사	경찰: 180명	20사단 2개 중대
	국방부·합참	군: 1,500명	20사단 1개 여단
집회 예상 지역 방호	광화문 일대	경찰: 15,000명	30 2개 여단, 9공수여단(현주둔지)
	여의도(국회)	.	20사단 1개 사단
비고	·707대대는 현 주둔지에 출동 대기타 중요시설 탈환작전 시 투입		

### □기타 지역

구분	경기	강원	충청	전라	경상
사단	2·5기갑	11사단	8사단	26사단	수기사
특전사	9여단	3여단	13여단	11여단	7여단

**【참고 4】 합동수사본부 편성표**

